



제 429회 국회 (정기회)
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인공지능집적단지 집적화 대상에 「고등교육법」 상 학교 추가〉

■ 홍기원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3094호)

2025. 11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이복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인공지능집적단지 집적화 대상에 「고등교육법」상 학교 추가(안 제23조제1항)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홍기원의원 등 12인

나. 발 의 일 : 2025. 9. 18.

다. 회 부 일 : 2025. 9. 19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·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·물리적·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공지능집적단지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적화에 단순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. 이를 통해 인력 양성-연구-개발-사업화의 전 주기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·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「고등교육법」상 교육기관을 포함하고자 함(안 제23조제1항).

Ⅲ. 검토의견

1. 인공지능집적단지 집적화 대상에 「고등교육법」상 학교 추가 (안 제23조제1항)

가. 개정안 요지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·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능적·물리적·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함(안 제23조 제1항)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(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·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<u>기관이나 단체</u> 의 기능적·물리적·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.	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(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</u> <u>관, 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</u> ----- ----- -----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다. 검토사항

-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(이하 “인공지능 기본법”)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기업·기관이나 단체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.
- 인공지능 기본법은 아직 시행 전이나 광주광역시도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과 함께 2021년부터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착수하여 2024년부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관련 인프라와 인공지능 분야 기업·기관이 입주하고 있음.
- 개정안은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인공지능기술 연구 개발 역량 확대와 인재양성과의 연계 및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 등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¹⁾도 집적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.
- 다만,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집적대상으로 규정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실질적으로 대학도 포섭될 수 있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1)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대학
2. 산업대학
3. 교육대학
4. 전문대학
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“원격대학”이라 한다)
6. 기술대학
7. 각종학교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도 ‘기관·단체’에 학교가 포함되어 집적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분명히 명시하여 인공지능 클러스터 구축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므로 개정안의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.

문 의 처
02)6788-5230